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불균형을 시정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21
----------	-----

제안년월일 : 2003년 1월 29일  
제안자 : 윤영위원장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정비하고 지방자치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2여년 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용산선 고가화 반대 및 경의선 일부구간의 완전지하화 개설요구에 관한 건의안

정부에서는 국가간선철도망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장래 경기 북서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비한 경의선 복선 전철화와 2000년대 수도권 지역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아태지역의 중추 공항기능을 수행하고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과 우리 서울시의 도심을 연결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건설교통부는 1999. 10. 9 경의선 복선전철의 용산~가좌구간 건설방안에 대하여 저심도 지하 4선으로 건설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지상1선(용산선)은 경의선 수송기능유지를 위하여 존치(공사후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철도청에서도 경의선 용산~가좌구간에 대하여 경의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지하화하고 지상 1선을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서울시와 노선협의 하였으며, 우리 서울시에서는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 교통·환경 등 문제발생이 예상되어 원상복구 지상 1선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도청에서는 화물 및 회송열차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폐지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원상복구 지상 1선(용산선)을 고가화하고 고가철도 하부공간은 도로, 녹지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현재 노선협의중에 있는데

본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기간 시설인 철도건설 사업으로서 철도청에서는 사업기간, 사업비 추가 소요 등의 사유로 경의선 복선전철 일부 구간 지상화와 용산선 원상복구 지상 1선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경의선 복선전철과 인천국제공항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용산선 철도의 고가화 설치 반대 및 경의선 일부구간의 완전 지하화 개설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일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현재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용산선은 지난 70년 동안 화물수송 전용선으로서 마포 중심 부를 동·서로 관통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남·북으로 갈리는 불이익을 받아왔고, 또한 양화로 등 주요 간선로를 횡단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용산선 주변 주민은 개발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소음과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에 시달려 왔으므로 용산선 및 경의선 복선전철은 주민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지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용산선을 14m 높이의 고가화로 설치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면 지상에서 열차가 운행될 때 보다 진동에 의한 소음피해가 오히려 확산되고, 하루종일 햇빛을 한번도 볼 수 없는 수많은 가구가 발생하며, 조망권마저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용산선은 반드시 완전 지하화 개설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만약 화물전용선이라는 이유로 지하화가 곤란하다면 기존 용산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현 경의선 구간에 용산선 기능이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넷째, 그리고 용산선 폐지 후 지상철도 부지에는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하루 20만대 이상의 교통량을 소화하고, 향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개성 공단 및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의 교통망 연계로 경제적 가치상승은 물론, 지역균형발진에도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 중 마포구 연남동 일부 구간 지상화 계획에 대해서는 용산역에서 가좌역까지 선로를 완전 지하화하여 연남동 인근 주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받아온 소음 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현재 서울시에서는 친환경적인 도심 조성을 위해 청계천 고가도로를 비롯한 기타 고가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대역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수천억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까지 후대에 도시의 흉물로 자리매김할 콘크리트 구조물인 용산선 고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으니 즉시 지하화로 변경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03. 2. 2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해당의원에게 시정질문 24시간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